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61 발의연월일: 2025. 1. 13.

발 의 자:김현정 · 민병덕 · 정태호

이학영 · 강준현 · 임오경

박균택 · 조승래 · 황명선

박 정・전재수・양문석

이개호 · 김문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은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감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회계분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도 고도로 지능화·다양화되어 사회적 폐해가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회계분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거

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바목 신설 등).

법률 제 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불공정거래조사"를 "불공정거래조사"를 "불공정거래조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로,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또는 주식회사·유한회사에 대한 감리"로 하고, 같은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에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 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 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 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 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 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 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 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불공정거래조사 또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u>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u>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 마. (생 략) <u><신 설></u>

5. ~ 8. (생 략) ② ~ ⑥ (생 략)

| 에 관한 법률」 | 제26조제1항 | | | | |
|------------------|----------|--|--|--|--|
| 제2호에 따른 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회사등에 | 대한 감독ㆍ | | | | |
| 검사 또는 주식 | 회사 • 유한회 | | | | |
| 사에 대한 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마. (현행 | 과 같음) | | | | |
| 바. 「주식회사 | 등의 외부감 | | | | |
| 사에 관한 법 | | | | | |
| | | | | | |
| 필요한 경우 | | | | | |
| 5. ~ 8. (현행과 같음) | | | | | |
| ② ~ ⑥ (현행과 | 같음) | | | | |